

美英特許紛爭和解料 1千5百萬拂

—美 오사서 英 EMI社에 支拂—

美·英國에 벌어졌던 컴퓨터·토머그래피(X線 CT 스캐너)에 관한 特許紛爭이 全面 合意段階에 들어갔다.

美 오하이오·뉴크리어는 美 테크니케어의 傍系會社로서 X線 CT스캐너를 製造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美존슨·앤드·존슨(J & J)이 X線 CT의 販賣를 目的으로 오하이오의 買收에 着手하여 今年 2월에 吸收合併에 관한 正式契約를 맺었다.

한편, 英 EMI로부터 X線 CT에 관해서 特許侵害訴訟이 오하이오에 提訴된 것은 J & J가 買收 意思를 表明하기 以前이라는 時間的인 背景도 있고 존슨이 오하이오를 吸收條件으로서 EMI와의 特許問題를 존슨이 解決한 후에 正식으로 합병한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宣言했었다.

그리하여 존슨은 EMI에 대하여 特許使用料로서 1,500萬弗을 支拂하는 조건으로 X線 CT에 관한 特許權實施契約를 맺는 데 합의하였다.

그 內容인 즉

1. EMI가 認定하는 특허실시계약에는 현재 EMI가 갖고 있는 X線 CT의 특허전부와 向後 5年間に EMI가 出願하여 언케되는 특허의 전부가 包含되며
2. EMI는 오하이오에 대한 소송을 取下하되 오하이오는 특허에 관한 債務는 없는 것으로 하고
3. 正式契約後 5년부터 10년까지의 5년에 限하여

EMI 및 J & J의 雙方은 各各 出願하여 取得한 X線 CT에 관한 특허를 서로의 相對로부터 實施許諾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등이다.

그뿐 아니라 所定の 販賣量을 超過하는 製品에 대해서는 1,500萬弗의 특허사용료 이외에 존슨은 EMI에 특허료를 追加支拂하기로 하였다.

한편 EMI가 美 GE 및 화이자의 兩社에도 同種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번 존슨과의 和解를 契機로 이를 따를 氣脈이 엿보인다.

이같은 提訴는 EMI가 自社特許權을 保護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또다른 뜻은 X線 CT가 國際市場에서의 大量消費 時代가 來到할 것을 豫想하고 자사의 특허권주장을 正當化하려는 데에 底意가 있는 것이다.

존이 EMI에 지불하는 巨額의 특허료도 대량소비 시대에 對備한 先制조치이며 이로써 市場體制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편 東南亞에서는 日本의 日立製作所와 EMI의 제품이 시장을 獨占하고 있으나 그 외에 오하이오의 제품을 팔고 있는 아로카(日本)나 화이자와 提携하고 있는 島津製作所(日本), GE와 제휴한 橫河電機(日本) 등도 商況에 영향이 미칠 것이며 어떠한 形態이건 基本的인 面에서 處理될 것이 分明하다.

美 特許 5件 實施許與

—NTIS서 日本企業에—

美商務省 國有技術情報서비스局(NTIS)은 日本總代理店인 株式會社제도를 통하여 NTIS保有發明 5件을 日本 企業들에 實施許與를 시작하였다.

對象라이센스는 ① 交叉結合芳香族폴리아미드膜을 使用한 逆浸透프로세스, ② 鹽化亞鉛에서의 亞鉛回收法, ③ 廣表面積還移金屬觸媒의 製造와 그 利用,

④ 身體障礙者用的 人工補綴器具, ⑤ 溫度測定技術 등이다.

이들의 特許는 그 모두가 日本關聯分野에서 큰 關心을 갖고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實施契約는 빠를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